199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심사보고서

1993. 12.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제안일자 : 1993. 11. 24

○ 제 안 자 : 남 구 청 장

나. 회부일자

○ 각 상 임 위 원 회 : 1993. 11. 24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993. 12. 1

다. 상정일자

○ 각 상임위원회

- 사회산업,도시위원회(1993.11.29) : 제27회 남구의회 정기회 상임위원회 제1차회의

- 운영,총무위원회(1993.11.30) : 〃

○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3.12.2) : 제27회 남구의회 정기회 예결특위 제2차회의

2. 제안 이유

○ 1992년도 세입세출결산을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결산서를 작성하고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함임.

3. 제안설명 주요골자 (제안설명:재무과장 유용현)

○ 세입 결산 현황 (단위:원)

구 분	예 산 안	전 년 도 이 월 예 산	예산총액	수납액	수납율 (%)
계	64,928,163,000	7,793,599,820	72,721,762,820	74,131,844,627	101.9
일반 회계	62,014,063,000	7,793,599,820	69,807,662,820	71,076,647,247	101.8
특별 회계	2,914,100,000	0	2,914,100,000	3,055,197,380	104.8

○ 세출 결산 현황 (단위:원)

구 분	예 산 총 액	지 출 현 액	불 용 액	익년도 이월액
계	72,721,762,820	65,786,279,180	4,175,815,900	8,345,565,447
일반회계	69,807,662,820	62,892,011,830	4,155,983,250	8,184,635,417
특별회계	2,914,100,000	2,894,267,350	19,832,650	160,930,030

○ 이월금 내역 (단위:원)

구 분	총 액	사 고 이 월	보조금집행잔액	순세계잉여금
계	8,345,565,447	2,759,667,740	800,987,000	4,784,910,707
일반 회계	8,184,635,417	2,759,667,740	800,363,000	4,624,604,667
특별 회계	160,903,030	0	624,000	16,306,030

○ 채권액 현황

회 계 별	금 액	내 역
계	1,861,729,849	
일 반 회 계	25,981,200	국·공유재산 매각 대금
특 별 회 계	926,587,430	새마을 소득 지원사업 융자금
	909,161,219	영세민 생활 안정 자금 융자금

○ 채무액 현황 (단위:천원)

91년도말 현재액	92년도 증감액			92년 도 말 현 재 액
	계	채 무 행 위 액	상 환 소 멸 액	
2,159,792	27,485	116,500	△89,015	2,187,277

○ 공유 재산 (단위:천원)

구 분	수 량	환 가 액
계		1,509,342,451
토 지	4,078필 / 2,951,044㎡	1,056,163,782
건 물	54동 / 27,008㎡	3,178,669

○ 물 품

- 자동차 등 정수물품 1,051점, 1,992,004,000원

가. 1992년도 세입예산액은 당년도 예산 64,928,163,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7,793,599,820원을 포함한 72,721,762,862원에 수납액은 74,131,844,627원이며,

나. 세출예산액은 당년도 예산 64,928,163,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7,793,599,820원을 포함한 72,721,762,862원에 지출현액은 65,786,279,180원이며, 불용액은 4,175,815,900원임.

다. 집행잔액인 8,345,565,447원은 예산 회계법 제47조 규정에 의거 익년도에 회계별로 이월하며, 그 내역은 이월금 내역과 같음.

라. 채권액, 채무액, 공유재산, 물품 현황은 위 표와 같음.

4. 검토 의견(전문위원 김용득)

가. 결산 총괄

1) 세 입 ———— 72,721,763천원

○ 일반회계 ———— 69,807,663천원

- 지방세 14,490,770천원
- 세외수입 23,015,707천원
- 조정교부금 15,266,000천원
- 보조금 17,035,186천원

○ 특별회계 ———— 2,914,100천원

-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 204,734천원
- 의료보호기금 2,406,510천원
- 영세민생활안정기금 302,856천원

2) 세 출 ———— 65,786,279천원

○ 일반회계 62,892,012천원

○ 특별회계 2,894,267천원

나. 재정 상태

○ 92년 일반회계 세입 결산액 69,807,663천원 중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 수입 37,506,477천원, 보조금, 조정교부금 등 의존 수입 32,301,186천원으로 재정자립도가 53.7%로 전년도 비해 약 3%로 증가된 추세이나 아직도 재정자립도가 미약하며,

○ 국고 또는 시비 지원없이는 자립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앞으로 자체 재원 확보는 물론 경영 수익 사업 발굴 등 심혈을 기울여 재정자립도를 점차 높혀야 할 것으로 사료됨.

○ 92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액 62,892,012천원은 기능별 분석하여 보면,

- 의　　회　　비　　557,912천원 (0.9%)
- 일 반 행 정 비　　15,370,469천원 (24.4%)
- 사 회 복 지 비　　13,715,215천원 (21.8%)
- 산 업 경 제 비　　1,680,273천원 (2.7%)
- 지역 사회 개발비　　29,106,147천원 (46.3%)
- 문 화 및 체육비　　537,416천원 (0.9%)
- 민 방 위 비　　1,276,571천원 (2.0%)
- 지원 및 기타경비　　648,009천원 (1.0%)으로 지출되었음.

다. 개선 사항

○ 92년 세입 세출 결산은 예산편성 및 집행상에는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세입 예산에 대하여는 징수 결정액의 부정확성으로 인한 비효율적인면이 있으며, 세출 예산에 대하여는 일부 공공요금, 차량비, 수용비 및 수수료 등은 예산을 절감한 노력이 상당히 엿보여 이는 바람직한 사항이며, 인건비적 예산,
특히 급여에 대하여는 근사치에 근접할 수 있도록 편성하여 많은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할 것임.

○ 예비비 지출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거 천재지변 또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 등 긴박한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으로 앞으로는 신중을 기해 집행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지방화 시대에 날로 증가하는 행정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는 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자체 수입 증대의 구체적 방안과 보다 효율적인 행정 업무 개선을 위해 실질적인 계획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

○ 그리고 결산 검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 자체적으로 향후 개선, 발전 방안을 수립하여 다시 재발하거나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5. 질의, 답변 내용

질의자	답 변 자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임종하 위 원	세무 1과장 이 재 두	○ 92년도 미수납액 322,600만원은 92년도까지 누계된 미수납액이냐? ○ 부동산 압류 건수는? ○ 경락 건수?	○ 5년동안의 누계액이 아니고 연도별 받도난 금액과 당해년도 체납액도 포함된 액수임. ○ 시세 부분만 8,603건에 216,100만원 ○ 61건에 54,800만원
박수용 위 원	세무 1과장 이 재 두	○ 결손 처분 건수 11건 437,408,000원 전체 구세액에 비해 적다고 생각되며 부산시내 전산조회 1회로서 결손 처분은 세수 손실이 아니냐? ○ 자동차세는 압류 조치만 하고, 방치하다 결손 처분한 경우가 많지 않느냐?	○ 결손 처분 건수 11건은 결손 처분 전체 건수가 아니며 앞으로 결손 처분할 때는 관계 조항에 의거 재산 행방 여부를 정확하게 조사해서 결손 처분 여부를 결정하겠음. ○ 자동차 등록 원부가 말소되지 않으면 결손 처분을 하지 않고 폐차등의 사유로 자동차 등록 원부 말소된 경우 결손 처분됨.
이계일 위 원	기획감사 실장 정 석 조	○ 93년도 현재 채무액은 얼마며, 은행에 빌려쓴 금액은 얼마냐? ○ 사회복지에 불용액이 많은데 공무원들이 쓰일 용도 등을 물색해서 불용액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 약 21억 정도되며 매년 상환이 되고 있으며 은행에서 돈을 빌려쓰지 않고 있음. ○ 사회복지비는 거의 국.시비이며 쓰이는 용도가 지정되어 사용하고 난 정산된 금액임.

질의자	답 변 자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박병화 위 원	세무 1과장 이 재 두	○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세외 수입의 미수납액이 많은 이유와 과오납 반납금 처리 이유?	○ 구,동사무소 전직원을 동원해서 책임량을 설정하여 징수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 ○ 정당한 과세에 납세자의 불복으로 소송에 패소할 경우, 과세면적의 착오등의 경우 감액되고 납세자들의 이중 납부할 경우 과오납으로 처리되어 납세자에게 반납함.
배영일 위 원	세무 1과장 이 재 두	○ 결산검사시 지적된 93종합토지세 체납액 현황에 대해 체납액이 다른 것은 이해가 된다 하나 건수의 이상은 이해가 안되는데?	○ 10만원이상 체납되었을 때 가산금 조정을 여러번 하더라도 수납할 경우 1건으로 처리되어 착오가 있었으며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음.
배영일 위 원	재무과장 유 용 현	○ 대통령령으로 지시된 회계규칙을 어긴 것은 대통령령을 무시했다는 지적을 했음 ○ 동정자문위원 수당, 통장 수당 지급 등의 지적 사항에 대해 지적했음.	○ 93.7.29 주무과 계장, 사무장, 회계 담당 직원을 1차 교육시켰으며 회계 관계 편람책자를 만들어 업무 인계 인수시 전달하여 차후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였음. ○ 잘못 지급된 통장 회의비 5,000원을 환수 조치하였으며, 동 정기 감사시 등을 통해 지도를 철저히 하여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음.

질의자	답 변 자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최진동 위 원	세무 1과장 이 재 두	○ 결손 처분한 11건을 다음해 전산망이 설치될 것을 알았을텐데도 결손 처분한 사유? ○ 부도난 업자가 몇년후에 다시 재산을 가지고 또 사업하는 경우가 많은데 은닉재산등에 대한 대책은?	○ 법인체의 도산으로 법인체 재산을 강제 경매하더라도 채권 확보가 불가능할 경우 징수가 어려우며 해당 법인의 재산 조회 결과 재산없는 것으로 판명되어 결손 처분 하였음. ○ 법으로 결손 처분했더라도 처분 당시 압류할 재산이 발견되면 결손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 처분하겠으며 앞으로 체납 처분에 대해서는 유념해서 처리하겠음.
정환모 위 원	세무 1과장 이 재 두	○ 체납액에 대한 징수 시효가 충분히 있는데도 1년만에 결손 처분을 한다는 것은 성급하지 않았으냐?	○ 법인체일 경우 법인체가 해산되면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으며 법인체에 일정한 지분을 갖고 있는 개인의 경우는 그 지분만큼 징수할 수 있음. 주주 명단등을 확인해서 채권 확보 방안을 강구 하겠음.
이계일 위 원	사회과장 황 경 조	○ 영세민 생활 안정 자금 대부시 조건을 완화시켜 대부하여 줄 수 없는지? ○ 영세민 생활 안정 자금 회수중 연체 부분은 얼마인지?	○ 보증인은 2인 이상에서 1인 이상으로 보증인 자격도 재산세 5,000원이상인 자 또는 연소득 600만원 이상인 자로 가능하도록 완화하였음 ○ 미회수금은 43,968,220원임

질의자	답 변 자	질 의 요 지	답 변 요 지
최진등 위 원	사회과장 황 경 조	○ 영세민 생활 안정 자금의 미회수시 영세민인 경우를 생각해서 결손 처분해 줄 수 없는지?	○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에게 결손 처분하기 위해 자료 수집중임.
박수용 위 원	사회과장 황 경 조	○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는 1인당 얼마이며, 상환은 잘 되고 있는지?	○ 전세 자금은 세대당 700만원까지 융자되어 영세민이기 때문에 회수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박병화 위 원	건설과장 박 성 덕	○ 지역개발비의 불용액이 2,526,000천원이고 사고이월비 2,665,000천원 등 불용액과 사고이월액이 많은 이유?	○ 지역개발비의 불용액은 사업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임. 이월사업비는 보상 관계등으로 인해 보상금 지급 기일 지체등으로 이월사업비가 생김. 의원님들의 협조로 이월사업비는 최소화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노력하겠음.

6. 토론 요지 : 없 음

7. 소수 의견 요지 : 없 음

8. 심사 결과 : 원안과 같이 승인(의결)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